

조선 · 도쿠가와시대의 법률교류사*

최종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진왜란(1592-97)이후 조선후기와 도쿠가와막부사이에 12회에 걸친 통신사의 왕래와 다양한 교섭이 있었다. 법의 측면에서도 그 동안 조명되지 못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신사의 일본법관, 조선 법률서의 일본 전래, 강항(姜沆)과 이진영(李眞榮) 부자의 활동,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아토 도카이(伊藤東涯)의 조선법 연구,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한일교섭활동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법률교류사는 문화교류사의 일환으로 특히 한일간의 유학(儒學)교류사와 맥을 같이 함을 확인하게 된다. 다산(茶山)은 일본 고학파의 저서를 읽고 “이제 일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고백하였다. 또한 기이번(記伊藩)의 국률(國律) 제정에서 이진영 부자를 통하여 조선의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명률(明律)」이 참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일법률 내지 법학교류사의 총론이고 형법, 민법, 소송법 등 각종 실정법역에서의 연구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1. 서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법은 일본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일본법의 아류(亞流)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일제통치하에 배운 법과 해방 후 일본법을 줄속하게 번역하다시피 하여 만든 한국법,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게 의지하는 일본 판례(判例)의 역할을 보면 한국법제 내지 법문화(法文化)는 상당히 일본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그렇지만 이것은 줄잡아 지금부터 1세기 이내의 현상일 뿐이고, 이것을 넘어 전통법(傳統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는 전혀 양상을 달리한다. 단적으로 말하여, 한국법이 일본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법, 한국법, 일본법은 독특한 역학관계 내지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아시아 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 Ostasiatisches Jus Commune)을 기초로 하여 일본법, 한국법으로 특수화(特殊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종고, 1999a:

* 이 논문은 2000년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지원사업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법에서의 일제잔재에 관하여는 심포지엄 특집,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本遺産의 극복」, 『法史學研究』 16호, 1996, pp.1-58.

67-85; 1999d 참조). 서양에서 로마법을 보통법(Jus Commune)으로 하여 독일법, 프랑스법 등의 국가법으로 발전한 것과 비슷한 관찰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차이점도 있어 역사를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 한국법이고 무엇이 일본법인가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물을 수 있고, 또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법사, 한국법사 나아가 중국법사를 자세히 이해해야하고, 동아시아법사를 조감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현재 중국, 일본, 한국의 법학자들, 심지어 법사학자들도 서양법사와 자국법사에만 관심을 갖지 동아시아법사 내지 다이내믹한 3국법 관계사에 대하여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양의 20세기’가 지나고 ‘동아시아의 21세기’를 맞으면서 동아시아 학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고조되면서 법사학에서도 동아시아법사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일·한 법사학자들의 공동연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²⁾

본 논문은 필자가 법사상사(法思想史)가로서 동아시아 법사상사에 대한 관심을 한일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노력이다. 한일법률교류사를 구명하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고대의 한일법률 교류
중국율령(律令)과 한국·일본법
2. 중세의 한국법과 일본법
한·일법의 토착화
3. 근세의 조선법과 일본법
명(明)·청률(淸律)의 수용과 변용
율학(律學)과 명법도(明法道)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
4. 일제통치기의 한일법률교류
한국법의 일본화
일본 유학생의 법률활동
5. 해방후 한일법률교류
남북한법과 일본법
「한일법학회」의 활동
‘일제잔재청산’과 한국법

2) 전공별로 연구회들이 있는데, 예컨대 한일법학회, 일한법문화비교연구회, 동아시아가속법학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동아시아법철학회 등이 있다.

이 광범한 한일법률교류의 역사를 모두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법사가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근세조선과 도쿠가와시대에서의 한일법률교류의 실상을 중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최종고, 1983, 1999c, 2000c: 60-76, 2001a: 8-22. 참조). 그 이유는 앞으로 한일양국이 주권국가로서 우호적,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조선과 도쿠가와시대의 한일교류가 교훈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일외교사 내지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들과 재일 한인 학자들에 의하여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사적 관점에서는 전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의 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원용하면서 법학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고대 중세의 한일법률 교류사

먼저 중 · 일 · 한 삼국에서 사용하는 ‘법’이란 문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의리’라는 말이 있고, 한국에도 ‘본’이란 말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래 전부터 오늘날까지 공통적으로 法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문자를 두고 중국인은 fa, 한국인은 bob, 일본인은 ho라고 발음만 달리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언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법이란 글자는 원래 ‘법’이라는 고대 중국어에서 온 것인데, piwap이라고 발음하던 것이 piwap→fwap→faf→fa로 변음되어 왔다는 것이다(A. Miller, 1998: 268-273; Roy A. Miller & N. Naumann, 1991). 사실 한국인, 일본인들이 f, h, p, b 발음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발음하는 것을 보면 fa, bob, ho라는 말이 모두 동근(同根)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bob이라는 발음이 고대 중국어의 발음에 가장 가깝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라는 원문자(原文字)에는 치(麋)(해치(獬豸) 혹은麒麟)이라는 신수(神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대 묘족(苗族)의 신의재판(神意裁判)(Gottesurteil)에서 치를 등장시키면 치는 반드시 부정직한 피고에게 다가가서 하나인 뿔(角)로 떠받는다는 고사(故事)가 있다. 따라서 치는 일각수(一角獸), 즉 유니콘(unicorn)인데, 한마디로 동양적 정의의 상징이라 하겠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법과 관련된 곳에는 해태가 등장하고, 심지어 1999년에는 서울의 대검찰청사에 해태상을 조각해 세웠다. 서양에서는 이 일각수 전설을 고대 그리스의 의사 체시아스(Cesias)가 중국과 인도에서 받아들여, 일각수는 산에 살면서 사냥꾼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며 다만 처녀가 쓰다듬어주면 스스로 잡혀준다고 묘사하고, 잡힌 유니콘은 인간의 신체의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교 신학과 결부되어 유니콘은 세상의 불의를 타파하고 성모 마리아의 품안에서만 잠

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화하기까지 하였다. 어쨌든 서양에서는 해태가 유니콘으로 이러한 의미 변용을 하면서 수많은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어왔다(최종고, 1995; 1998; 2001b 참조).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상징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부터 유스티치아(Justitia)여신을 택하여, 한 손에 칼(劒), 한 손에 저울(秤)을 든 인격상을 법정, 법과대학, 시청 등지에 조형화 하여 건립하고 있다. 서양의 인격화(personification)에 비해 동양에서는 해태라는 동물을 통하여 자연화(naturalization)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동양에서도 치의 본래적 의미가 변질되어 너무 통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부터 중국·한국에서는 법복(法服)과 법모(法帽)와 관복 같은 법과 관련된 곳에는 해태의 형상을 그렸는데, 거기에서도 점점 해태를 제화소복(除禍召福), 축사위선(逐邪衛善)등의 주술적 상징으로 변질되었다. 서울의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석상은 일각을 잃어버린, 화마를 퇴치하는 해타(sea carmel)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마이누(狛犬 혹은 高麗犬, Korean Dog)가 일각을 보지(保持)하고 있지만 신사의 수호신처럼 되었고, 「기린 이찌방(麒麟 一番)」 맥주의 상표에 일각을 가진 기린으로 변모되어 있다. 어쨌든 이러한 문화권에 따라 변용 되는 법상징을 연구하는 것이 법상징학(Legal Symbolics, Rechtssymbolik) 내지 법미학(Legal Aesthetics, Rechtsästhetik)의 과제이다. 서양에서 발전되고 있는 이 연구분야는 동아시아법사와 법사상의 이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Otto Kissel, 1991; W. Schild, 1993; 최종고, 2001b; Iwatani Juro, 1995: 75-100; 森征一·岩谷十郎編, 1996. 참조).

동아시아에서도 ‘법’이 신화와 전설에서 시작하여 고대부터 중·일·한 지역에 상당한 접촉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고대법사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대의 법률교류를 논하자면, 고대에 과연 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존재했겠느냐는 ‘고대법’ 자체의 문제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Henry Maine, 1861, 1986; 최종고, 2001c: 21-58).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법처럼 책에 글자로 쓰여져 있지도 아니하였고,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매우 소박하고 관습과도 구별하기 어려운 단순한 규범 내지 질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고대법의 교류를 연구한다는 것은 법전의 비교 같은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법생활 내지 법관념의 비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대에 한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빈번한 접촉과 다수인의 이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일본에 도내인(渡來人)으로 알려진 하다(秦)씨의 본고장은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추정되고 있다.³⁾ 열려있는 바닷길을 따라 벼농사와 잠업, 石製와 기술, 불교와 유교 등이 일본에 대폭 전래되었다(이진희, 1982:7-93; 大和岩雄, 1993; 1997판(7판)). 이것을 동경대학의 이

3) 이 일반설에 대해 주목할 다른 주장으로 이른바 「日古同根論」이 있는데, 하다(秦)씨는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유대인이라는 주장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異敎(조로아스터교)를 통해 일찍 유대인이 한반도와 일본에 도래했다는 것이다(月海千峰, 1993; 水上涼, 참조).

노우에(井上光貞)교수는 “마치 메이지시대에 구미의 외인교사들이 유럽문명을 이식한 역할과 유사한 것”라고 표현한 바 있고(井上光貞, 1983), 재일 사학자 이진희씨는 “도래인들의 역할은 마치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한 유럽 이주민들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다(이진희, 1982: 53). 이에 대하여는 고고학의 발굴을 기초로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바이지만, 법의 관점에서도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이 있다.

1. 일본의 지명과 고대 관직명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한국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고호리(評)’제(制)는 한국의 ‘고을’제(制)를 도래집단(渡來集團)이 가져온 명칭인데, ‘고호리’는 701년 타이호료(大寶令)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본의 대부분 선진지역에서 행정구획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법사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나카다 가오루(中田 薫)교수의 선구적 연구들이 시사적이다(中田 薫, 1926; 1956).

2. 고대에는 정치, 법, 종교가 융합된 이른바 정교일치제(政教一致制)였기 때문에 법규범은 근본적으로 종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차차웅(次次雄)이란 한국 관직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라의 초기 국왕들은 ‘샤만’(Shaman)이었으며, 그들은 즉위 직후 시조묘제(始祖廟祭)를 지냈다. 이 시조묘제는 6세기 이후 친사신궁(親祀神宮)으로 발전하는데, 일본의 신궁의 원류는 바로 이 신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진희 1982: 25). 한국에서는 7세기 중엽부터 불교와 율령체제의 확립에 따라 샤마니즘은 배경 당하여 민간신앙으로만 연명해 왔는데, 일본은 국가신도예로까지 ‘공식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관에게 쓰이는 용어, 즉 fafuri에서 유래한 はふり(祝)라는 이름은 법(fa 혹은 bob)과 조선에의 푸리(풀이)가 합쳐진 말이라 한다. 즉 ‘법푸리’가 일본에 건너와 파푸리→하후리가 된 것이다(Roy A. Miller & N. Naumann, 1991). 이것은 동아시아의 법개념의 종교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기초이다.

3. 쇼토쿠(聖德)태자가 만들었다는 헌법17조(憲法十七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고대사만 아니라 일본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쇼토쿠태자의 역사적 실체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大山 誠一, 1999). 어쨌든 그가 만들었다는 헌법17조는 오늘날 의미의 헌법과는 전혀 달리 관인들이 지켜야 할 심득(心得)으로서 ‘和’를 중심한 유교윤리와 불교사상을 종합한 것이다(野澤政直, 1990). 마치 신라의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고대 법규범은 한중일의 정신과 윤리의 종합태로 폭넓게 연구해봄직하다.

4. 중국이 일찍부터 율령격식을 갖추어 율령국가를 이루었고, 이것을 본받아 조선에서는 고구려가 소수림왕 3년(333)에, 신라가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제정하였다. 고구려는 중국의 진국의 태시율령(泰始律令)을, 신라는 당률(唐律)과 고구려률(律)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전봉덕, 1968: 257-316). 일본에서는

7세기 내지 8세기에 율령이 제정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중국율령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한편 고대에도 중·한·일의 광범한 접촉도 있었다는 사실도 부각되고 있다. 나까다 가오루(中田 薫)는 “율령법계야말로 년수를 말하자면 한(漢)에서부터 청(淸)까지의 약 2천년까지 존속하였고, 지역을 말하자면 넓은 동서의 남북에까지 파급된 동양의 일대체계이며, 비교법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다(中田 薫, 1064: 69)”고 하였다.

이처럼 고대부터의 광범한 동아시아법적 교섭이 있었지만 중·한·일은 중세기에 들어서서는 각각 자국법제로의 특수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에서도 한족(漢族)이 몽고족의 원왕조(元王朝)의 지배를 받게되어 법제적 난맥을 보여주었고, 그와 무관하지 않게 고려법은 독특한 존재형태를 보여주었다(송두용, 1985; 한용근, 1999 참조). 일본의 중세법은 대륙법에서와는 매우 다른 독자적 방향으로 전개되었다(John Hall, 1979 참조). 그렇지만 어느 때도 율령체제에 기초한 동아시아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일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법사는 보편성과 특수성, 중국법과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잘 파악하여야 온전한 서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楊鴻烈, 1937; 최종고, 1999d; 2000b 참조). 한국법과 일본법의 교류과정도 이러한 동아시아법의 다이내믹한 맥락 속에서 고대 중세를 거쳐 14세기 이후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시대로 전개되었다.

III. 조선전기의 한일법률교류

동아시아는 19세기 서양세력이 동점하기 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 14세기에 명나라가 서고 17세기에 청나라로 바뀌어도 이러한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다만 조선에서는 이씨 왕조가 14세기부터 500년간 안정되게 지속되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아시카가(足利)씨족의 무로마찌(室町) 막부에서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거쳐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무가정권이 교체되고 있었다. 몽고족인 원 왕조를 뒤이은 명은 중국의 전통적 지배정책을 답습하여 책봉체제(冊封體制)를 통해 주변국가들을 통제해 나갔다. 명이 건국할 무렵 일본은 남북조시대로서 중국과의 국교는 없었고, 조선은 고려말기로서 원의 책봉을 받고 있었다. 명 태조로부터 통교의 요청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것을 거부했고 고려는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의 간섭 때문에 고려 국내의 분열이 격화되고 친명정책을 쓴 이씨조선의 태종은 1401년에 조선 국왕으로서의 호명과 인장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국교를 맺으며 1403년에 ‘일본국왕’의 책봉을 받았다. 이런 국제정치를 일반적으로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이라 부른다.⁴⁾

조선은 왕조수립의 시초부터 일본에 대해 선린외교(善隣外交)의 기본정책을 세워 고려 때부터 국난이 되어온 왜구의 단속을 일본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수호를 위한 교섭의 길을 터놓고 있다가 드디어 아시카가 정권과 국교를 맺게 되었다. 아시카와 요시미쓰는 명에게 책봉을 받은 후 1404년에 「일본국왕 겐도오기(源道義)」라 자칭하며 사신을 조선에 파견하여 해적을 엄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하고 대신 대장경(大藏經)의 증여를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는 보방사(報聘使)를 보내어 이에 대답하였는데, 이때부터 일본 국왕으로서의 아시카가와 조선 국왕과의 관계가 명의 책봉을 전제로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되었고 외교의례의 형식도 성립되었다. 요시미쓰의 사망 후 아시카가 요시모찌(足利義持)는 명의 책봉을 거부했지만 조선과의 국교는 계속하였다. 역사학자 로빈슨(Kenneth Robinson)은 14-16세기의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를 ‘조선왕을 중심삼기’(Centering the King of Chosŏn)라고 표현하면서, 조선의 대일본·대유구에의 적극성을 조명하고 있다(Kenneth R. Robinson, 2000a: 109-125). 그후 아시카가 정권은 명과의 국교를 회복했고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도 과거의 전통대로 세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을 「일본국왕」으로 하는 외교체제가 계속되었다. 조선으로부터는 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 그 연대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대	정사	부사	書狀官	사 명
1428	朴瑞生	李 藝	金克柔	義持의 사망과 義宣의 계승축하
1439	高得宗	尹仁甫	金禮蒙	修好 확인
1443	卞孝文	尹仁甫	申叔舟	義宣의 사망과 요시카츠의 계승축하
1459	宋處檢	李從實	李 觀	佛典의 증정(해상조난·행방불명)
1475	裴孟厚	李明崇	蔡 壽	(항해중지)
1479	李亨元	李季同	金 訴	(쓰시마에서 귀환, 정사는 거제도에서 사망)

1443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 파라간 신숙주(申叔舟)는 일본을 방문하고 「해동제국기」(1471)를 저술하여 일본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었다. 일본의 국풍을 간단히 소개하였는데, 일본법에 대한 관심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⁵⁾

1419년에 기근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대마도민(對馬島民)이 조선의 연안을 습격한 일이 있어, 태종은 병선 27척과 1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공격하였다(応永の倭亂). 태종이 죽고 난 후 세종은 대일무단정책(對日武斷政策)을 배척하고,

4) 자세히는 M. Frederick Nelson(1946: 86-106)에 서술된 東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철학적 이해 요약 참조. 그리고 John B. Henderson(1984) 참조.

5) 한글 번역본은 「해행총재」(민족문화추진회간) 1권에 실려있고, 일본역은 田中建夫 譯註로 「海東諸國紀: 朝鮮人の見た 中世の日本と流球」(岩波文庫 458-1), 1991로 출간되어 있다(Kenneth R. Robinson, 2000b: 87-98).

통호교역을 위하여 도내하는 왜인들을 우대하고, 세건선의 정약, 국서, 통신부, 서계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내선자들을 통제하였다.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대마번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개항장으로서 부산포(富山浦(부산))와 내이포(乃而浦(진해))외에 염포(塩浦(마산))를 더하여 삼포로 확대하는 한편, 그 이외의 지역으로의 내항을 엄중히 금지하였다. 삼포와 한성에 왜관(倭館)이라 불리는 객관(客館)을 짓고 일본으로부터 온 사절을 접대하였다. 그러나 사(私)무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1510년 삼포의 일본인들이 결속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삼포의 왜란」이다. 조선 정부군에게 패배한 항거왜(恒居倭)들은 대마도로 도망하였다. 조선과의 무역이 단절되어 궁지에 몰린 대마는 쇼군 및 대내씨(大内氏)에게 간청하여 조선과 다시 교섭하고, 수년 후 임신약조(壬申約條)에 의하여 교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세건선의 반감, 항거왜(恒居倭)의 불허가, 도서의 삭감 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조선과 일본간의 무역은 극도로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中村榮孝, 1965).

조선전기의 법 상황을 살펴보면, 태조는 즉위한 후 바로 정도전, 조준 같은 학자신하에게 명하여 「경제육전」(1377)을 편찬케 하였다. 세조(1455-68 재위)는 「경국대전」의 편찬작업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이르러 1485년에 완성하였다. 이것이 19세기의 신법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조종성헌의 법으로서 조선법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법전을 구비하였지만 그 내용은 대명률(大明律)을 통용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유교윤리에 기초한 예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중국보다 더 ‘동방예의지국’임을 자부하고 있었다(최종고, 1982, 2001c: 93-113, 1999b: 99-125).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유교도 송대의 주자학을 교조적으로 숭상하여 양명학이나 불교는 공식적으로 ‘사문난적(斯門亂賊)’으로 배척되고, 유학 자체도 공리공론으로 경도되고 사림정치의 폐단이 노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국법의 원리에서 크게 해방되지 못하고 법률적용에서 고식적으로 정체되어 새로운 창의와 중흥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 중반의 부진상태에서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이 결정적인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1592년, 풍신수길군의 조선침략 즉 임진왜란(일본에서는 文祿の役)이 발발하였다. 그 앞선 해에 조선은 통신사로 하여금 일본의 형편을 알아오라고 했지만 당쟁 때문에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서로 엇갈린 보고를 받아 아무런 전쟁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군은 경상도, 충청도를 쉽게 공략하고 한달 만에 한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에서 최북단 함경도에까지 진격하였다. 국왕 선조 일행은 압록강변 의주에까지 도망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조선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을 제하고 거의 붕괴되어 각지에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항거하였다. 명군이 내원하면서 전황은 크게 바뀌었다. 싸움에 지친 일본군 사이에도 화의의 요구가 높아졌고, 소서행장과 명장 심유경 사이에 강화교섭이 이루어져 휴전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조건들에, 특히

임진왜란에서 왕릉을 범침한 자들을 잡아오라는 요구에 격노한 풍신수길은 다시 출병을 명령하여 정유재란(慶長の役)이 발생하였다. 이듬해 수길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군은 철퇴하였지만, 조선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는 대단히 컸다. 많은 인명이 죽었고, 궁전, 서적 등 문화재가 전화에 소실되거나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법의 관점에서 조선 전기와 실정 시대를 보면, 조선이 중국법을 참조하여 대법전 편찬사업에 성공하고 그것에 기초한 법치와 예치를 수행해 나갔지만, 일본에서는 중세적 봉건질서에 기초하여 조선법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공가법(公家法), 본소법(本所法), 무가법(武家法) 등으로 일본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갔다(Dan Henderson, 1957: 100-121; Ishii Shiro, 1976).

IV. 조선 · 도쿠가와시대의 조일법률교류

1. 조선통신사

도요토미 정권을 무너뜨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외교관계를 극도로 축소하고 쇄국정책을 펴면서 국내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그는 국내통일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명과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마도의 소오씨(宗家)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무역과 외교를 전담하였다. 1609년에는 15세기 이후 계속 사용되어 온 조약을 개정한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되어 메이지 정부에서 외교권을 접수할 때까지 한일수호통상의 기준으로 역할하였다. 이리하여 1607년부터 도쿠가와 정권 아래서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맞이하였다. 그 인원수가 매년 정사, 부사, 정서관 이하 450명에서 500명이나 되었다. 통신사의 교환은 단순한 외교행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도 적지 아니하였다(三宅英利/손승철역, 1991; 中村榮孝외, 1982; 신기수, 1991: 이원식, 1991; 김의환, 1991; Ronald Toby, 1991. 참조). 통신사 일행으로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법률로 규율하였고, 소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처벌받았다. 조선통신사의 일정이 결정되면 그에 필요한 비용과 인마가 15번국에 분담되었다. 일본측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 부담이 과중하여 감소해달라는 진정들이 쌓일 정도였다.⁶⁾ 거대한 국가행사를 위하여 일본 민중이 어떻게 법을 통하여 동원되었는지는 앞으로 좀더 입체적으로 연구

6) 예컨대 1748년 겸괘촌(兼掛村)의 분담은 금양(金兩)이었는데, “저희 마을은 저번에 댕뎡지를 상납하였으니 이번의 할당은 반으로 줄여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라는 호소가 있었다(신기수, 1991: 334-336).

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조선통신사의 연대와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연대	정 사	부 사	書狀官	사 명
1607	呂祐吉	慶 暹	丁好寬	수교 · 포로쇄환
1617	吳允謙	朴 梓	李景稷	오사카 평정 · 일본 통합의 축하 · 포로쇄환
1624	鄭 垚	姜弘重	辛啓榮	家光세습의 축하
1636	任 統	金世濂	黃 屏	太平을 축하
1643	尹順之	趙 綱	申 濡	家綱 탄생 축하
1655	趙 珩	俞 暘	南龍翼	家綱 세습의 축하
1682	尹趾完	李彦綱	朴慶後	綱吉 세습의 축하
1711	趙泰億	任守幹	李邦彦	家宣 세습의 축하
1719	洪致中	黃 紳	李明彦	吉宗 세습의 축하
1748	洪啓禧	南泰耆	曹命采	家重 세습의 축하
1763	趙 曦	李仁倍	金相翊	家治 세습의 축하
1811	金履喬	李勉求	-	家齊 세습의 축하(쓰시마에서 응접)

이처럼 호화스럽고 번거로운 통신사의 영접에 대하여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내 실각되고 좌절되었다(Kate W. Nakai, 1988). 그후 더욱 성대한 통신사의 영접이 있다가 1788년에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 1730-1804)이 다시 조선통신사를 대마도에서 접대하자는 간소화 안을 주장하였다.⁷⁾ 막부의 재정궁핍 때문에 1811년의 통신사는 대마도에서 접대하여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막부는 두 차례에 걸쳐 9만냥을 대마번에 보내어 사관의 신축과 개수에 사용케 하였다. 또 강호유학(江戶儒學)의 주류를 이루는 학자들을 대마로 보내어 성의껏 영접케 하였다. 조선에 기근이 들어 무역이 부진하게되자 막부는 1815년에 쌀 2만석을 제공하였다. 그후 12대 쇼군 이에요시(家慶)가 습직한 1837년에도 통신사를 초빙했으나 재정곤란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후에도 쇼군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3번 통신사 초빙이 막부에서 거론되었지만 일본측의 재정문제와 정치불안으로 그때마다 보류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왜관에는 대마번의 관이가 상주하였고, 동래부사와 대마번주 사이에는 항상 긴밀한 연락이 취해지고 있었다. 예컨대 1866년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자 조선정부는 곧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여 유럽제국의 침입에 대처하도록 충고하였다. 1866년이라면 명치유신 2년 전의 일이다.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

7) 中井竹山은 오사카의 관허(官許)의 유학숙(儒學塾)인 회덕당(懷德堂)의 제4대 숙두(塾頭)였는데, 1791년에 「草茅危言」 전5권을 지었다(葛本一雄, 1998: 25-40; 加地伸行: 24).

으며 성의로 대해야 한다”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외교 및 국제법사상은 메이지 정부에 의해 포기되고 마침내 금세기의 불행한 한일관계를 초래하였다.

2. 조선인의 일본법관

위에서 본대로 조선통신사는 중국에로의 연행사(燕行使)와는 수가 훨씬 적었지만 통신사들은 그들의 기록을 남겼다. 이 일본사행기록(日本使行記錄)들은 영조대의 상서 홍계희가 수집하여 「해행총재(海行摠載)」라고 이름하여 출간되었다. 1914년에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974년부터 3년간에 걸쳐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하여 「국역 해행총재」 전12권을 간행하였다. 이것을 읽어보면 조선통신사들의 일본에 대한 여러 관찰과 견해를 볼 수 있다(고병익, 1996: 144-175). 그들은 모두가 공식사행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자유로운 견해와 인상을 표명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고, 임진왜란에서 입은 피해로 적개심과 증오감, 유교적 기준에서 내린 평가로 멸시와 우월감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제도와 문물이 좋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우월감과 편견에서 그것을 도입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영정시대에 중국사행의 학자들이 청조의 실용적 문물제도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사뭇 태도가 달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리와 인문, 풍속과 인상을 기술했지만 법을 포함한 제도의 배경과 역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법에 관하여는 단편적인 언급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일본의 법률의 엄격함과 상급자에 대한 엄한 부복연동이나 형벌에 태장이 없이 참사를 예사로 한다느니 하는 기록이 보인다. 1607년의 통신사의 부사 경칠송(慶七松)은 그의 「해사록(海槎錄)」에서, 일본인은 중죄인은 사형을 시키며, 경죄인은 가산을 몰수한다. 인성에 관하여는 협기를 숭상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검을 빼어 사람을 죽인다고 기록하였다(慶七松, 丁未 6月 11日). 이석문(李石問)은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형할 즈음에는 극히 참혹하여, 더러는 십(十)자로 된 나무에다 사람을 묶어 놓고, 혹은 불로 지지기도 하고, 혹은 창으로 찌르기도 한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결하기를 원한다. 목욕하고 이발을 한 다음 눈을 감고 엽불하면서 스스로 배를 가르고 손으로 오장을 끄집어내어 죽으면, 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칭찬 주고, 그 자손도 또한 세상에 이름이 높아진다. 더러는 목을 뻗치고 칼날을 기다리는 자도 있는데, 이미 참한 후에는 칼을 시험하는 여러 왜인이 모여들어 난도질을 하여 육장을 만들되 조금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대개 그들의 습성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풍속이 죽음에 용감한 것을 영화롭게 여기고 죽음을 겁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눈 한번 흘기는 것도 만드시 보복하고, 말 한마디에도 시기를 부려 사람 죽이는 것을 능사로 삼고, 굵

히지 않는 것을 장기로 여긴다. 웃어른께 삼가함이 없고 골육간에도 칼질을 하여, 사납고 모진 성질은 참으로 일종의 승냥이와 같다(李石門, 1617).

1655년 사행(使行)의 종사관 남용익(南龍翼)은 「문견별록(聞見別錄)」에서 일본의 왜황대서(倭皇代序), 관백차서(關白次序), 대마도주세계(對馬島主世系), 관제(官制), 주계(州界), 산천(山川), 풍속십조(風俗十條), 병양(兵糧), 인물(人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사행록(使行錄)의 주옥(珠玉)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럼에도 관제(官制)편을 읽어보면 공관관제(公館官制), 이관팔성(二官八省), 직계(職階), 국유별(國類別), 사등관(四等官) 등의 설명이 있고, 당조(唐朝)의 관명(官名)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부직제(幕府職制)에 관하여는 쓰지 않았다. 이것은 율령관제(律令官制)를 현행으로 잘못 알았는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일본국에는 형옥(刑獄)의 법은 없고, 태장(笞杖)이외에는 모두 참죄(斬罪)라고 적었다(南龍翼, 1655).

임수간(任守幹)은, 일본인은 체력이 조선인보다 못하지만 우리 땅을 짓밟은 것은 단지 총과 칼에서 우월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법령이 엄혹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기도 하였다(任守幹, 1711). 조명채(曹命采)는, 일본인들의 하는 일이 모두 정정연(井井然)하여 법도가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曹命采, 1748). 통신사들은 일본이 중국과 조선에서 서적을 많이 수입하고 그것을 빨리 간행하는 것에 감탄하였다. 김학봉의 「해사록」,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간양록」 등 비밀스런 책들도 이미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 것을 보고 이것은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구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분통해 하였다. 서적에 관하여는 “각양서책병서(各樣書冊兵書)와 마땅히 기휘해야 할 문자 등을 몰래 흘리고 사통한 자는 律로 엄히 다스린다”고 금지되어 통신사들도 서적을 함부로 갖고 갈 수 없었다.

한마디로 통신사 자신들이 문사출신의 정치인이었기도 하지만 일본인 지식인들을 만나면 주로 시와 사상을 필담으로 나누었지 적극적으로 일본의 법제를 알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일본에 수입된 서양문물이나 병술 같은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조선 지식인은 대부분 중화적 사대사상(事大思想)을 갖고 있었고, 유교사상에 입각한 강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함께 다양한 사고와 문화양식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배우기보다도 한 수 가르쳐준다는 생각에만 차 있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서적을 가져갔지만(中村榮孝, 昭和 40: 517-572), 조선은 일본서적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일본에 전수된 서적 가운데 법률서는 「경국대전」 같은 법전 이외에도 지금 한국에 남아 있지 않은 소송법서들도 있었다. 16세기에 간행된 「청송제강(聽訟提綱)」은 나고야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사송유초(詞訟類抄)」는 동경의 내각문고에, 「대전사송유취(大典詞訟類聚)」는 쓰쿠바대학(

筑波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田川孝三, 1968, 1980; 任相赫, 2000). 도쿠가와가강(德川家康)은 애서가였고, 1601년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수집하고 출간하였는데 사후유언에 따라 하야시 좌잔(林羅山)이 책임을 지고 미주(尾州), 기주(紀州), 수호(水戸) 3가에 분배하였다. 이러한 준하어양본(駿河御讓本) 속에 조선법률서가 얼마나 소장되고 있는지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일본에서 중국을 어떻게 전수 받아 학습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이미 大庭 脩, 奥野彦六, 헨더슨(Dan Henderson)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大庭 脩, 1967; 奥野彦六, 1979; Dan Henderson, 1970: 21-56).

새로운 명·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영향이 컸던 것은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48-1751)에 의하여 추진된 명률연구였다(大庭 脩, 1971: 61-95). 중국의 법률체계는 당률(唐律)과 명률(明律)이 그 쌍벽을 이루었다. 명태조(明太祖)는 그 출신이 비천하여 고생을 알았기 때문에 중국인민의 통치를 철저히 하려고 명률의 제정에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립된 명률이 청으로 크게 연속되어 중국법의 뼈대를 이루었다. 조선도 건국 초부터 이 명률을 의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⁸⁾

요시무네(吉宗)는 기주번주(紀州藩主) 도쿠가와광정(德川光貞)의 아들이었는데, 기주번에서는 명률의 연구가 특별히 성행하였다(小早川欣吾, 1927: 197-257; 松下忠, 1934, 1953. 참조). 도쿠가와광정은 유자(儒者) 사카키바라 고슈(榊原篁州)에게 명하여 「대명률예언해(大明律例諺解)」를 완성시켰다(1694). 언해(諺解)는 훈점(訓点)을 붙여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명률을 해독하기 위하여는 중국속어의 지식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명의 멸망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 오인현(吳仁顯)이 도움을 주었다. 고슈(篁州)는 오인현에게서 중국어를 배웠다. 광정의 뒤를 이어 기주번주로 된 요시무네는 유자(儒者) 다카세 기보쿠(高瀬喜朴)에게 명하여 조선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훈점을 가하게 하고, 또 사카키바라 고슈(榊原篁州)의 아들 하주(霞洲)와 마정춘택(馬井春澤)에게 「대명률예언해(大明律例諺解)」를 보정(補訂)케 하였다(百瀬明治, 1965: 113-137).⁹⁾ 요시무네가 1716년에 쇼군에 취임한 후에도 명률에 대한 흥미는 계속되어, 高瀬喜朴에게 명하여 1720년에 「大明律例譯義」를 완성케 했다. 이 무렵 조선 통신사로 와서 요시무네를 만난 신유한(申維翰)은, 요시무네가 “일본인은 조선인의 시문(한문)을 찬(纂)하지만 배우기에는 미치지 못해 나는 일본어로 쓴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요시무네는 한문을 읽을 능력을 상당히 갖추었지만 전문적 학자도 읽기 어려운 명률(明律)을 일본어로 번역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8) 조선에서의 大明律 受容에 관하여는 趙志晩(1998) 참조.

9) 百瀬明治(1965: 138-156)의 저서에는 요시무네의 조선인삼의 수입에 대하여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0) 申維翰, 「海遊錄」, 한글역은 張相燮역, 正音社, 1976이 있고, 姜在彦의 日譯도 있다.

것이다. 더 나아가 명률과 함께 청의 법률인 「대청회전」의 일본역을 명하였다. 그 일은 심견현대(深見玄垚; 1648-1722)가 맡았는데, 그는 중국인 고수각(高壽覺)의 손(孫)으로 장기(長崎)의 당통사(唐通事)로 근무하다가 신정백석(新井白石)의 추천으로 막부의 유관(儒官)이 된 인물이었다. 현대(玄垚)의 아들 심견유린(深見有隣)(1691-1773)도 1721년에 장기에 내려가 중국의 학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일본어 번역작업에 참가하였다. 심견현대 부자는 조선통신사와도 교류하였기 때문에 조선법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이원식, 1980: 49-67).

이러한 명, 청률 및 조선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요시무네는 서민도덕(庶民道德)의 보급에도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였다. 「육유언의(六諭衍義)」는 청의 세조 순치제(順治帝)가 인민교화를 위하여 반포한 ‘부모에게 효순(孝順)’, ‘장상(長上)에게 존경’하게 하는 기본적 도덕을 적은 육개조(六個條) 「육유(六諭)」에 해설을 붙여 민간에 보급시킨 것이다. 이 책이 일본에 들어오는 데에는 유구인(琉球人) 정순칙(程順則; 1663-1734)의 공헌이 컸다. 그가 가지고 온 이 책은 유구에 널리 보급되었고, 쇼군 요시무네에게 헌상되었다. 요시무네는 이것을 읽고 서민교육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로 쿠쇼(室鳩巢)에게 번역을,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에게 훈점(訓点)을 붙여 「육유언의대의(六諭衍義大意)」란 이름으로 출간하게 하였다(1722). 또한 뒤에서 말하듯 퇴계(退溪)의 유학과 이진영 부자의 역할이 연결된다.

3. 형조좌랑(刑曹佐郎) 강항

강항(1567-1618)은 조선의 성리학자 강희맹 5세 손으로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였다. 1593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교서관박사(校書館博士),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공조좌랑(工曹佐郎), 형조좌랑(刑曹佐郎) 등 관직을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광정의 종사관이 되어 남원에서 항거하였다. 그후 영광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싸우다가 두 형제와 함께 왜군에 잡혀 오사카로 끌려갔다. 가진 고생 끝에 선승(禪僧)이던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와 알게 되어 주자와 이퇴계의 유학을 가르쳐 유자(儒者)로 전향시켰다. 후지와라로부터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됨에 따라 강항은 일본 성리학의 원조로 꼽히게 되었다. 후지와라와 그 후견자인 아카마츠(赤松廣通)의 도움으로 4년만에 조선으로 귀국하여 일본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을 적어 「간양록(看洋錄)」으로 남겼다. 여기에서 실제로 일본의 제도와 일본인의 생활을 생생히 경험하고 관찰하여 조선이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는 1598년에 귀국한 이후 1602년에 대구교수(大邱教授)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간양록」은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한일교류사에 중요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阿部吉雄, 1965, 1998; 渭川健三, 1988. 참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일본에서 포로신세로 있으면서도 일본의 정보를 수집하여 「적중봉소(賊中封疏)」를 작성하고 두 번에 걸쳐 도망을 시도하고 세 번 임금께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여러 제도와 풍속을 눈 여겨 관찰하였다. 그는 적기를,

마음속으로 따져 보고 왜에게 물어 본즉, 수백 년 전의 왜국 법령은 대개 중국이나 우리 나라와 다름이 없어서, 귀인의 집에 사사 종(奴)을 두는 것이나, 범인이 사전(私田)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수령들의 경질,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는 것 등이 대략은 서로 같았으니, 대개 수천 리의 한 낙국(樂國)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동장군(關東將軍) 너조(賴朝)가 전쟁을 일삼은 이래로는 마침내 하나의 전국(戰國)을 이루었습니다(姜沆, 1974: 183).

라고 하여, 일본법의 대체적 성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조선과 달리 과거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학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이어서 국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그들이 우리 나라의 토지가 기름지고 의식이 부족한 것과 제 나라의 법령이 각박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잇닿은 것을 비교해 보고 항상 말하기를, “조선은 진실로 낙국(樂國)이요, 일본은 진실로 더러운 나라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그 말을 받아 깨우쳐주며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행복한 왜인에게 그 은휼(恩恤)을 다하여 음식과 의복이 일제히 장관과 같으며, 간간이 삼품(三品)의 중한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다”고 하자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혀를 내밀며 감탄하여 진심으로 귀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姜沆, 1974: 140).

이렇게 강항은 일본의 실상을 보고하면서 조선국왕 선조에게 우리 나라에서 1593-94년에 항복해온 일본인들을 간혹 죽여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미 귀순하였으니 좋은 방법으로 거느리고 이용하는 것이 좋지, 사형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건의하였다. 강항은 형조좌랑을 지낸 경륜도 있어서인지 한일양국의 법제도를 비교적 안목으로 관찰하고 숙고한 학자로 돋보인다.

4. 이진영(李眞榮)과 이매계(李梅溪) 부자

지금까지 한국 사학과와 법학과에서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중요한 인물로 필자는 이진영·매계·일양 삼부자의 생애와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에 경도(京都) 방문을 통하여 화가산(和歌山)에 있는 이씨 묘지와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은 학문적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이진영(1571-1682)은 조선의 경상도 영산에서 출생하여 유사(儒士)로 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의병으로 대항해 싸우다 포로가 되어 부산에서 승선되어 대판(大阪)으로 끌려갔다. 노복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조선출신 승을 알게 되어 화가산 해선사에 기거하게 되었다. 1605년에 대판에 나가 생계를 위해 역학원을 세우고 한문을 가르쳤다. ‘당인역자(唐人易者)’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일본여자와 결혼도 하였고, 기주번(紀州藩)의 중신(重臣)인 죽전경암(竹田慶庵), 영전선제(永田善齊), 남마주계위(南麻主計尉)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의 알선으로 번주(藩主) 도쿠가와뢰선(德川賴宣)을 알현(謁見)하고, 국정에 참고하도록 336자에 이르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바쳤다. 그 내용은 뇌선(賴宣)이 기주번주(紀州藩主)로 봉해진 것을 축하하고 국기(國基)의 튼튼함과 번주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번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주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었다.¹¹⁾ 일종의 제왕학(帝王學)의 내용으로 민본정치, 덕치주의, 인화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뇌선은 이진영에게 신하가 되어 주기를 부탁했으나 조선인으로 불충이군(不忠二君)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다만 시강(侍講)의 직을 맡아 화가산성(和歌山城) 이환어전(二丸御殿)에서 가르쳤다. 1626-27년 사이에는 대마(對馬)에 파견되어 대조선(對朝鮮) 교역의 실무에 참여하였다. 당시 통신사의 방일(訪日)은 없었지만, 대마종가문서(對馬宗家文書)에는 이진영의 기록이 있을 텐데 아직 분석되지 못하였다.¹²⁾ 당시 대마번주(對馬藩主) 종의성(宗義成)과 중신(重臣) 유천조흥(柳川調興)의 불화가 극심하였고, 드디어 유천(柳川)의 국서위조사건(國書僞造事件)이 발각되어 유천은 장군 가광(家光)의 친재(親裁)로 유형(流刑)을 받았는데 이진영은 가까이에서 이 사건을 관찰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시 기주(紀州)로 돌아와 시강직(侍講職)을 계속하다가 1682년 63세로 서거하였다. 현재 화가산 해선사에 「조선국이씨진영지(朝鮮國李氏眞榮之墓)」가 있다. 그가 얼마나 당시 기주번(紀州藩)을 중심으로 한 명물연구에 공헌을 했는지는 마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 1643-1724) 번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무로씨(室氏)가 어느 날 우삼동오랑(雨森東五郎; 芳洲)이 그에게 명물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중가에서도 논의되었는데, 법전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항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가져가 물은즉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예를 들면, 미곡지율문(米穀之律文)에 쓰인 척곡임침(踢斛淋針)이라는 말인데,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해 조선인에게 물어서 비로소 터득하게 되었다(小早川欣吾, 1927: 211).¹³⁾

11) 진본(眞本)은 소재불명이고, 1927년 4월3일 화가산(和歌山)시에 사는 산구화성(山口華城)이 진본에서 모사한 사본이 현재 화가산시 해선사에 소장되어 있다. 건의문의 한글번역은 李相熙(1997: 135-153)에 수록.

12) 다만 泉澄一, 「對大馬宗家文庫史料に見られる 紀伊徳川家」라는 논문이 있는데, 1634년 이후부터 분석하고 있다.

13) 그리고 Dan Henderson(1970: 33)에도 영역(英譯)되어 있다.

이처럼 이진영은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 한문으로 된 명률해독에 유권적 해석을 줄 수 있는 지도적 학자였던 것이다.

이진영의 자 이매계는 1660년(만치 3)에 번주 뇌선의 요구로 「부모장(父母狀)」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기주 도쿠가와 250년간 번정(藩政)의 교육지침이 되었고, 번의 풍교유지(風敎維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부모장」이 제정된 경위(經緯)가 있다. 1658년 기이국(紀伊國) 용야(熊野)에서 실부(實父)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년 범인은 방탕한 부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개전(改愼)의 정이 조금도 없어 관헌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뇌선은 유신 이매계로 하여금 죄인에게 「효경」을 가르치며 강의하여 개전시키도록 하였다. 매계는 매일 옥사(獄舍)에 가서 「효경」을 가르치며 인륜의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완고한 범인은 1년, 2년이 지나도 회심하지 않다가 3년째에 들어서야 비로소 회오(悔悟)의 심정을 표명하였다. 매계의 노력과 고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뇌선도 이를 듣고 매계를 칭찬하고 수인(囚人)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정사(政事)는 정사이다. 나라에 형이 없으면 법은 지탱할 수 없으니 국법을 어찌 달리 하겠는가”라고 하여 법에 따라 수인을 처형하였다(濱田康三郎, 1942: 11-12). 그 후 「부모장」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1663년 11월에는 뇌선이 「가준수지조목십오조(可遵守之條目十五條)」를 반포하여 효도를 성문화하였다. 한 때는 옥사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어 뇌선은 군봉행(郡奉行)과 대관(代官)에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5대 번주 요시무네는 유관(儒官) 저원남해(祗園南海; 1676-1751)로 하여금 「효자전(孝子傳)」을 저술하도록 하였다.¹⁴⁾ 화가산현(縣) 유전군(有田郡) 광천정(廣川町)에 있는 양원사(養源寺)에는 요시무네가 매계의 글씨를 본떠서 쓴 「부모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매계는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도쿠가와창업기고이(德川創業記考異)」(10책), 「대군언행록(大君言行錄)」(2책), 「역설(易說)」(혹은 일양현이설(一陽軒易說)), 「잠와잡기(潛窩雜記)」, 「매계문집(梅溪文集)」 등이다. 그의 묘는 화가산시(市) 해선사에 부(父)의 묘와 나란히 안장되어 있고, 1975년에 화가산현 문화선각자로 현창(顯彰)되었다(李相熙, 1997: 246 참조). 우리 나라에도 고향 영산에 현창비가 세워졌다. 그 동안 잊혀져온 한일교류사의 공헌자라 하겠다.

5.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과 아토 도카이(伊藤東涯)

위에서 잠시 본대로, 사카키바라 고슈(榊原篁洲)는 1694년에 「대명률언해(大明律例諺解)」를 저술하였고, 다카세 기보쿠(高瀬喜朴)는 1720년에 「대명률예역의(大明律例譯義)」를 저술하였는데, 그것은 중국의 「율예전석(律例箋釋)」에 의존하면서 조선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참고하였다(小林宏, 1988).¹⁵⁾ 마

14) 일본에서의 효행에 관하여는 Charles Holcombe(1997: 543-573); 菅野則子(1999).

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 1643-1724)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법률서를 포함하여 각종 서적을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오마 오사무(大庭脩)교수의 자세한 분석서 “「江戸時代における唐船持渡書の研究」(關西大出版部, 1967)”가 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조선통신사의 영접에 대하여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선 국왕의 위상과 통신사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의 관제와 법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¹⁵⁾ 여기에 조선의 기본법전 「경국대전」과 「대명률직해」가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다(李泰鎮, 1987). 그는 특히 ‘일본국대군에서 일본 국왕’으로의 복호(復號)를 주장하면서 「조선신서식(朝鮮新書式)의 사(事)」에서 이렇게 적었다.

本朝 天子의 일은 다른 나라로서는 天皇 혹은 天王이라고 칭하고, 將軍家の 일은 國王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조선의 여러 책에도 보인다. 또 大元, 大明의 天子가 우리 나라의 將軍家에 대대로 보내온 詔勅書에 모두 日本國王이라고 칭했고, 明代에 이르러서 일본국왕을 책봉할 때도 두 번 있었다. 太宗때 麻苑院公方이나 神宗 때의 豐臣關白當家에 이르러 조선과 隣好를 맺을 때에도 처음부터 그 나라로부터 오는 서식은 日本國王으로 칭하여 이미 옛날부터 양국왕래의 서식에 쓰여졌던 것이다(「新井白石全集」第4卷 수록: 三宅英利(1991: 293) 재인용).

고학과(古學派)의 개조(開祖)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의 장남 이토 도카이(伊藤東涯; 1670-1736)가 「조선관직고(朝鮮官職考)」(1711)와 「제도통(制度通)」(1924)이라는 저술을 낸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 「경국대전」 이전편(史典編)을 해설한 그의 「조선관직고」는 그 서문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본래 예의의 나라이다”고 칭찬하고 있다. 「제도통」에서도 중국과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을 일본이 조선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한 것이라고 소박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인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우월감과 조선인에 대한 멸시감정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조선의 대륙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강했던 것이다.

6. 국제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아메노모리 호슈는 1668년 비와코(琵琶湖) 근처의 사가겐(滋賀縣) 다카고츠(高月町)의 아메모리(雨森) 마을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세에 교토로 가

15) 특히 동서(同書) 707-740에 실린 논문, 「大明律例譯義について」와 741-773에 실린 논문, 「熊本藩と大明律例譯義」 참조.

16) 자세히는 奥野彦六(1979).

서 기노시타준안(木下順庵)의 문하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무로 규소(室鳩巢)도 있었다. 1693년에 對馬藩의 眞文役으로 부임하여, 1705년에는 ‘조선코토바 게이코(朝鮮言葉稽古)’ (유학생)으로서 부산에 있는 왜관에 부임하여 5년간 체재하였다. 3년만에 경상도 방언까지 익힐 정도로 어학에 재능이 있었다. 「교린수지(交隣須知)」를 저술하여 조선의 천문, 인물, 관칭, 매매 등 71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1720), 「교린제성(交隣提醒)」(1723)을 저술하였는데, 후자의 책에서 성신외교(誠信外交)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성신(誠信)한 교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 뜻을 정확히 분간하지 못한다. 성신이라 함은 참뜻이라는 말로서,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문(眞文: 漢文)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신(誠信)인 것이다. 조선과의 진실한 성신의 교제를 하려면 송사(送使: 조선왕조로부터 매년 쌀과 콩을 하사하기 위한 사절)를 사퇴하여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습을 그 나라에서도 쉽사리 바꾸자고 하지는 않을 터이니, 우선 관습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조선에 신용을 더 잃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인은 그 성질이 간교해서 의(義)를 가지고는 굴복시키기 어렵다”라는 신숙주(申叔舟: 1442년의 서장관(書狀官), 뒤에 재상)의 문장도 있다. 그 나라는 부담과 손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사송(使送)과 그 밖의 접대를 지금까지 진과 다름없이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이 우리의 간교한 성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어떻든 간에 먼저 조선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않고서는 어떤 사태에 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할 경우 부언잡설(浮言雜說)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조선 측의 「경국대전」(經國大典), 「고사촬요」(攷事撮要) 등과 阿比留惣兵衛가 지은 「선린통교」(善隣通交), 송포의석위문(松浦儀石衛門)이 지은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및 「분류기사, 기사대강」(分類記事, 紀事大綱) 등의 기본 서적을 숙독하여, 전후를 잘 생각해서 대하는 것이 요긴하다(이진희, 1982: 208-209; 上田一雄, 1982: 43-67; 上垣外憲一, 1989; 水田紀文, 1994: 226-228).

그는 또한 예의의 나라 조선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고 번주에게 건의하여 서당을 개설하여 번사(藩士)의 자제들을 교육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조선 통신사의 병례(聘禮)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자 격렬히 반대하였다. 개혁안은 1711년의 통신사 초빙에 즈음하여 종래의 국서(國書)에 ‘일본국대군’으로 되어있는 도쿠가와 쇼군(德川將軍)의 칭호를 ‘일본국왕’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그것은 ‘대군’은 조선에서 임금(王)의 적자군(嫡子君)의 칭호 때문에 도쿠가와 쇼군이 그 칭호를 쓰는 것은 적예(敵禮; 대등한 관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통신사가 강호(江戶)에 도착했을

때 사관(舍館)에로의 의예방문(儀禮訪問)을 ‘로췌(老中)’에서 ‘고끼(高家)’로 격하하며, 삼사(三使)와 쇼군과의 회견 때 쇼군의 좌석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정사(正使)가 조선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예조참의(禮曹參議:외무부 국장급)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본다면 이 개혁안은 전혀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선에서는 일본 사신의 상경을 인정하지 않고 접위사(接慰使)가 부산에 가서 접대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무거운 재정부담을 돌보지 않고 진수성찬으로 환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두(大學頭) 하야시 라잔(林羅山)과 쓰시마번의 마쓰우라 카쇼(松浦霞沼) 등도 전례를 갑자기 바꾸어 간소화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반대하였는데, 아메노모리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양인 사이의 30년간의 친교가 단절되었다. 조선과의 선린관계 유지에 온갖 정성을 바쳐온 아메노모리로서는 아무리 쇼군의 보좌역의 개혁안이라 해도 받아들이 수 없었다. 외교일선에서의 인식과 막부의 체면에 대한 생각 사이의 차이이라고도 하겠다. 어쨌든 하쿠세키는 얼마 되지 않아 해임 당하고 1719년의 통신사부터는 더욱 성대한 환영이 펼쳐졌다.

아메노모리는 1711년과 1719년 두 번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호행하여 에도에 다녀왔다. 오늘날까지도 소조원(小條原)에서 마거본(馬居本)까지 이르는 40킬로에 이르는 길을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라 부르는 명칭이 남아있다.

그의 「교린제성(交隣提醒)」은 31세 때부터 조선방좌역(朝鮮方佐役)으로 임명된 후 30년간 통신사를 두 번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 외교 실무가로서의 경험과 사상을 담은名著이다. 1738년에는 ‘재판역(裁判役)’으로서 조선에 다시 가서 현안문제들을 처리하였다. 이 재판기록은 그의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 주는데, 현재 관서대학 동서학술연구소에서 정리하여 「방주외교관계자료집(芳洲外交關係資料集)」으로 출간되어 있다(泉澄一編, 1982).

아메노모리는 그후 퇴임한 후에도 계속 대마도에서 살다가 1755년에 88세로 사망하여, 현재 이즈하라(嚴原)의 長壽院이란 절에 묻혀있다.

1990년 6월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부터 270년 전 조선과의 외교에 종사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정의와 신의를 신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상대역이었던 조선의 현덕윤(玄德潤)은 동래(東萊)에 성신당(誠信堂)을 짓고 일본의 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양국의 관계도 이러한 상호존중과 이해 위에 공동의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고 하였다.¹⁷⁾ 이 발언 이후 아메노모리(雨森)는 일본에서도 유명해졌고, 오늘날 이곳은 「東아시아 交流 하우스(雨森芳洲庵)」로 가꾸어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17) 호슈(芳洲)는 현덕윤(금곡(錦谷))이 초량(草梁) 왜관의 건물을 개축했을 때 무의미한 미사여구로 이름짓지 않고 「성신당」이라 명명한 것에 감명하여 63세인 1730년 8월 「성신당기(誠信堂記)」를 기술하여 보냈다(「雨森芳洲全集」3·4(1982); 滋賀縣教育, 1994).

있다.

7.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비록 일본을 방문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 관해 적지 않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당시로는 상당히 독특하고 진취적인 일본관을 갖고 있던 학자였다.¹⁸⁾ 다산 이전에도 일본의 유학에 대해 이익(李瀾)이나 안정복(安鼎福) 등이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학파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초보적인 것이었다. 다산의 경우는 고학과 유학자들의 저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당시 조선 지식인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를 보였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한일 문화교류사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상사 전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다산의 「고시(古詩) 24수」 중 그가 34세 되던 1795년에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이름난 유학자가 많다고 하나	日本多名儒
정학(正學)은 아직 보지 못하겠구나!	正學嗟米見
이등(伊藤)이 고학을 좋아한다고 칭하고	伊藤稱好古
적생(荻生)이 더욱 고무선동하였네.	荻氏益鼓煽
그 유파가 신양(信陽)에까지 미쳐서는	流波及信陽
편파된 음사로 경서를 어지럽혔다.	謗淫亂經卷
오곡을 맛보기도 전에	五穀未始嘗
피와 가라지가 무성하구나.	稗穉種已遍
위태롭구나! 정주학 맥이여	危哉洛閩脈
조선도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鷄林亦一線
아! 세상 형편이 이와 같으니	世運噫如此
밤 깊어 홀로 잠 못 이루네.	中夜獨轉輾

(「여유당전서」 제 1집 제 2권(1981: 34))

여기에서 다산은 일본 고학파의 유학을 다소 피상적으로 그들의 反주자학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서술연대는 모르지만 1800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론(日本論)」에서는 일본 유학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다.

일본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이 이르는 바 고학(古學)선생인 이등(伊藤)씨의 글과 적(荻)선생, 태재순(太宰純) 등이 논한 경전해석을 읽어보니 모두가 그 수준이 찬연하였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일본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 의논에 간혹 꾸부러진 것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적 분위기

18) 자세한 것은 한영우(1983), 강재언(1986), 하우봉(1988: 211-263) 참고.

가 성숙되어 있음에 틀림이 없다. ...문화가 우세하게 되면 군사적인 침략을 하거나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다. 저 몇 사람의 유학자들의 경전과 예를 논의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그 나라에는 반드시 예의를 숭상하고 먼 장래까지 고려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침략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여유당전서」 제1집 제12권: 241).

이처럼 일본에 대한 소박한 낙관론을 가진 다산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시이아(示二兒)」에서 다시 이렇게 적었다.

일본은 근래에 명유(名儒)가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물부쌍백(物部雙栢) 같은 사람이 있는데 호는 조래(徂徠)이고 해동부자(海東夫子)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제자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지난번 통신사행의 사행원을 통해 조본염(條本廉)의 글 3편을 얻어 보았는데 글이 모두 정예하더라. 대개 일본은 본래 백제를 통해 서적을 얻어 보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몽매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강소(江蘇), 절강(浙江)지방 등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부터는 중국의 좋은 책을 사가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다. 또 일본에는 科擧제도의 폐단이 없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학문이 우리 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여유당전서」 제1집 제21권: 443).¹⁹⁾

이렇게 다산은 조선과 일본을 과거제도를 통하여 비교 평가하면서 일본의 학문의 발전의 비결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도 일본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의 명저(名著)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에서도 중국의 판례를 주로 분석 논평하는 데에 그쳤다.²⁰⁾

V. 조선법전의 일본유입

1.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조선의 「대명률직해」가 임진왜란 무렵에 일본에 전래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소장해 있었다. 그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게 넘겨져 이에야스가 준하(駿河)에 퇴거하였을 때 갖고 있다가 그가 죽은 후 미장번(尾張

19) 여기에 나오는 조본염(條本廉; 1743-1809)이란 인물은 강호(江戶) 초기의 유학자이며 그의 글은 1811년의 조선 사신의 사행 때로 보여진다. 소라이(荻生)에 관하여는 Maruyama Masao(1974); Charles Wing-Hoi Chan(1998: 195-232); 그리고 野口武彦(1993).

20) 다산의 법사상에 관하여는 朴秉濠(1985), 흠흠신서의 법학사적 해부는 沈羲基(1985); 최종고(2001c: 180-187); Mark Setton(1997).

藩)의 조의직(祖義直)에게 양도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명률직해」 혹은 「대명률강해」라고 불리는 명칭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²¹⁾

명률은 맨 먼저 오원년(吳元年; 1367)에 편찬하여 홍무(洪武; 1368)에 반행(頒行)하였고, 다시 홍무 6년(1373)에 편찬하여 홍무 7년(1374)에 반행하였다. 세 번째로 다시 개정하여 홍무 28년(1395)에 편찬하여 홍무 30년(1397)에 반행하였다. 첫 번째 오원년의 명률은 당률과 달리 주(周)의 육관에 이름을 따서 이, 호, 예, 병, 형, 공의 육부에 맞추어 편성되었지만 망실되어 그 내용은 불명하다. 두 번째 홍무 6년 명률은 「영락대전」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남은 전편은 그 후 분산되어 각소에 그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대명률직해」는 홍무 22년(1389)의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名例律	卷第一	計 四十七條	
<吏律>			
職制	卷第二	計 十五條	
公式	卷第三	計 十八條	(合計 三十三條)
<戶律>			
戶役	卷第四	計 十五條	
田宅	卷第五	計 十一條	
婚姻	卷第六	計 十八條	
倉庫	卷第六	計 二十四條	
課程	卷第八	計 十九條	
錢債	卷第九	計 三條	
市廛	卷第十	計 五條	(合計 九十五條)
<禮律>			
祭祀	卷第十一	計 六條	
儀制	卷第十二	計 二十條	(合計 二十六條)
<兵律>			
官衛	卷第十三	計 十八條	

21) 「校訂 大明律直解」解説(15면)에 보면, “원래 이 책에 「大明律直解」라는 題名이 붙여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大明律로 인식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종전에 책을 다른 類書와 구별하기 위하여 혹은 直解大明律 혹은 大明律直解같은 호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도 편의상 後者の 명칭을 따르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軍政	卷第十四	計 二十條	
關律	卷第十五	計 七條	
廐牧	卷第十六	計 十一條	
郵驛	卷第十七	計 十八條	(合計 七十四條)

<刑律>

賊盜	卷第十八	計 二十八條	
人命	卷第十九	計 二十條	
鬪毆	卷第二十	計 二十二條	
罵詈	卷第二十一	計 八條	
訴訟	卷第二十二	計 十一條	
受贓	卷第二十三	計 十條	
詐僞	卷第二十四	計 二十條	
犯姦	卷第二十五	計 十條	
雜犯	卷第二十六	計 二十一	
捕亡	卷第二十七	計 八條	(更定律 二十九條)
斷獄	卷第二十八		(合計 百六十八條)

<工律>

營造	卷第二十九	計 九條	
河防	卷第三十	計 四條	(合計 十三條)

<合計> 卷三十卷 四百五十六條 (實數 四百五十八條)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직해」는 호사(蓬左)문고에도 있고, 나이가쿠(內閣)문고에도 있다. 나이가쿠문고에 있는 것은 다카세 기보쿠(高瀬希撰; 1668-1749)의 손에 의해 방훈(旁訓)이 가해지고 난외(欄外)에 주기(註記)가 찍어 있다. 그리고 그 권말(卷末)에는 기보쿠가 본서를 하야시 라잔(林羅山)선생에게 받아 스승의 명에 의해 국어방훈(國語旁訓)을 가하기에 이르렀다고 전말을 쓴 발기(跋記)가 붙어있다. 다카세 기보쿠가 「대명률직해」에 방훈두주(旁訓頭注)를 완료한 것은 정덕(正德) 2년(1712)이었는데, 도쿠가와 막부는 6대 쇼군 도쿠가와가선(徳川家宣)의 치세하(治世下)였다.

2. 「대명률강해 (大明律講解)」

또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강해」가 일본의 여러 군데 소장되어 있다. 즉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대본문고(大本文庫)에 있는 것은 3책(30권)으로 되

어있다(「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大本文庫分題目錄」: 63). 또 내각문고(內閣文庫)에도 같은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조선의 고활자(古活字)로 인쇄된 것이다. 조선의 고활자는 경자자(庚子字; 1480년대), 갑인자(甲寅字; 1494년대), 을해자(乙亥字; 1515년대), 갑진자(甲辰字; 1544년대)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대명률강해」의 간행은 정종—명종代(1512년 경)로, 1510년에서 1570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奥野彦六, 1979: 131).

이러한 조선간행의 명률 주석서들이 일본에 일찍 수입되어 일본의 법전편찬에 참고가 되었다는 것은 뜻깊다고 하겠다.

3.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1518)이 일본에 유입되어 특히 이토 도카이(伊藤東涯)에 의해 이전을 중심으로 한 「조선관직고(朝鮮官職考)」(1711)가 편찬된 것은 매우 뜻깊다. 이것은 조선을 법치주의의 모범으로 보고 일본에서도 참고하려는 의도가 보인 출판인데, 그러나 일본의 관제를 조선의 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제를 조선의 법전에 따라 연구한 것은 적어도 조선통신사를 맞으며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었다고 하겠다.

4. 번국입법(藩國立法)

일본은 조선과는 자연환경, 정치 및 사회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법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양국의 당시 법전을 놓고 얼마나 같은 조항이 있는가를 비교하려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게 비교한들 ‘빚나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문 속에 담겨 있는 ‘법사상’이 얼마나 같은가를 비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과 달리 각 번국(藩國)들로 할거하고 있었고, 구계호(公家法), 혼조호(本所法), 부계호(武家法)로 법의 존재형태가 달랐다. 그 중 번법(藩法)을 연구해보면, 조선법과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많은 번법을 다 검토할 수 없지만, 키이(紀伊)와 와카야마(和歌山) 번국(藩國)의 「국률(國律)」에서 조선법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십악(十惡)과 팔의(八議)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²²⁾

22)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최종고, 1999a, 1999b, 1999c, 1999d 참조).

VI.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과 도쿠가와 시대의 한국법과 일본법의 교섭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근 3세기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 중 일반적 법의 시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총론적 접근에 불과하고, 헌법, 형법, 행정법, 사회법, 국제법 등 각 실정법역(實定法域)에서 분석하면 더욱 자세한 각론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²³⁾ 어쨌거나 한일법률교류사를 오늘날의 현행법적 체계와 시각에서 고정화하지 않고 당시의 법의 존재양태에 가깝게 파악하고, 그것을 외교사 내지 문화교류사와 관련지어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본 논문과 같은 연구도 기본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전통적 동아시아법 질서 속에서 보면, 일본법과 조선법은 항상 중국법과의 관련 속에서 상호 교섭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동양사학자 고(故) 민두기(閔斗基) 교수는 이러한 동아시아질서를 중국의 중심 내지 중화로 삼으면서도 조선과 일본은 ‘필요한 오해’에 기초하여 소중심질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린’해 왔다고 설명한다(Min Tuki, 1996: 6). 이런 흐름 속에서 18세기말까지는 조선은 일본에 대하여 법을 포함하여 많은 문물을 전달해 주었고, 일본은 그것을 진지하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은 일본법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자세를 별로 갖지 못하였다.

19세기 말 서양법이 수용되고, 20년 남짓 앞서 근대화 내지 서양화한 일본은 조선을 병합 지배하게 되었다. 그후 오늘날까지 한국은 일본법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오고 있다. 여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는다면 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스스로 배우려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교만한 자는 실패에 이른다는 진리일 것이다.²⁴⁾

23) 한일간의 법률사건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최종고(2000a: 23-38).

24) 동아시아의 미래에 관하여는 金容雲·陳舜臣(2000). 특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하여는 森嶋通夫(1996: 20-33).

참 고 문 헌

- 강재언. 1986. 「정다산의 일본관」. 『정다산과 그 시대』. 서울: 민음사.
- 강항(姜沆). 1974. 『看羊錄』. 민족문화추진회. 140,183면.
- 고병익. 1996. 「조선통신사의 일본관」,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44-175.
- 김용운 · 진순신. 2000. 『한 · 중 · 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서울: 문학사상사.
- 김의환. 1991. 「부산(釜山)의 초래(草來) 왜관(倭館)과 대일통신사외교」. 『한일 문화교류사』. 김태준 외. 신문고.
- 남옹익. 1655. 『문견제록(聞見制錄)』.
- 박병호. 1985. 「다산의 법사상」. 『정다산(丁茶山) 연구의 현황』. 서울: 민음사.
- 三宅英利. 손승철(역). 1991.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서울: 이론과 실천사.
- 송두용. 1985. 『한국법제사고:고려율(高麗律)의 연구』. 서울: 진명문화사.
- 신기수. 1991. 「통신사의 길에 비친 한일교류」. 『한일문화교류사』. 김태준 외. 신문고. pp.334-336
- 심희기. 1985. 「흠흠신서(欽欽新書)의 法學史的 解剖」. 『사회과학논집』. 영남대학교.
- 이상희. 1997. 『波臣의 눈물(壬辰亂 때 捕虜가 되었던 李眞榮 · 李梅溪 父子 一代記)』. 범우사. pp.135-153, 246.
- 이석문. 1617. 『부상록(扶桑錄)』.
- 이원식. 1980. 「朝鮮通信使と 深見玄堊」. 『日本歴史』 384號. 49-67頁.
- _____. 1991. 「통신사가 남긴 문화」. 『한일문화교류사』. 김태준 외. 신문고.
- 이진희. 1982. 「兩森芳洲의 韓國觀」. 『한국과 일본문화』. 서울: 을유문화사. 1982. pp.7-93, 208-209
- 이태진. 1987.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유전(流傳)」. 『삼불 김원웅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일지사.
- 임상혁. 2000.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논리의 전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임수간. 1711. 『동사일기(東槎日記)』.
- 자하현교육위원회(滋賀縣教育委員會)編. 1994. 「우삼방주(雨森芳洲) 관계자료조사 자료집」. 1994.
- 전봉덕. 1968. 「신라(新羅)의 율령고(律令古)」.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출판부. pp.257-316.
- 조명채. 1748. 『奉使日本時 聞見錄』.
- 조지만. 1998. 「朝鮮初期「大明律」의 受容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최종고. 1982.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 · 도덕 · 예」. 『韓國의 規範文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83. 「東洋法思想史の 課題と 方法」. 『法の 理論』 (9). 成文堂.
- _____. 1995. 『법(法)과 미술(美術)』. 시공사.

- _____. 1998. "Images of Justice East and West." paper read at Center for Japanese Studies and East-West Center, Honolulu.
- _____. 1999(a). 「東아시아 普通法論」. 『법학』 40(2). 서울대학교. pp.67-85.
- _____. 1999(b).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Asian Jurisprudence in the World*. Seoul. pp.99-125.
- _____. 1999(c). *East Asian Jurisprudence in the World*. Seoul.
- _____. 1999(d).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aw until the End of 18th Century: In Search of an East Asian Common Law*. Seoul.
- _____. 2000(a). 「17,18세기 한일간 법률사건고」. 『법학』 41(4). pp.23-38.
- _____. 2000(b). 「日本法と 韓國法の 交渉史」. 『日本法と 韓國法の Identityと 交流』. 立命館大 法學部 세미나 발표문.
- _____. 2000(c). "The Foundation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 『법학』 41(1).
- _____. 2001(a). 「東アジアにおける法と正義の基礎」. 『21世紀 日韓の 正義と 人權』, 日本大學綜合科學研究所. pp. 8-22.
- _____. 2001(b). 『법상징학(法象徵學)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 _____. 2001(c).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pp. 21-58, 93-113, 180-187.
- 하우봉. 1988. 「다산 정약옹의 일본 유학연구」. 『한국문화』 (9). pp.211-263.
- 한영우. 1983. 「다산 정약옹의 사론과 대외관」 『김철준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한응근. 1999. 『고려율(高麗律)』. 서경문화사.
- 『여유당전서』 제1집 제12권. 1981. 경인문화사. p.241.
- 『여유당전서』 제1집 제2권. 1981. 경인문화사. p.34.
- 加地伸行. 「中井竹山・中井履軒」. 『日本の法思想叢書』 24.
- 葛本一雄. 1998. 「朝鮮通信使の 廢絶と 中井竹山: 徳川中期に見る 日本的 華夷思想」. 『東アジア研究』 21號. pp.25-40.
- 慶七松. 丁未 6月 11日. 「海槎錄」 下.
- 菅野則子. 1999. 『江戸時代の孝行者: 孝義錄の世界』. 吉川弘文館.
- 大山誠一. 1999. 『聖徳太子の誕生』. 吉川弘文館.
- 大庭 脩. 1967. 『江戸時代における 唐船持渡書の 研究』. 關西大學出版部.
- _____. 1971. 「徳川吉宗と 大清會典」. 『法制史研究』 21券. pp.61-95.
- 大和岩雄. 1993. 1997. 『泰氏の研究』. 大和書店.
- 百瀬明治. 1965. 『徳川吉宗』. 角川選書 260. pp.113-137, 138-156
- 濱田康三郎. 1942. 『父母狀の話』. 紀伊郷土社. pp.11-12
- 森鳩通夫. 1996. 「アジア經濟共同體」. 『翰林日本學研究』 제1집. pp.20-33.
- 森征一・岩谷十郎編. 1996. 『法と 正義の Iconology』. 慶應大出版部.
- 上垣外憲一. 「兩森芳洲」. 中公新書. 1989.
- 上田一雄. 「朝鮮通信使와 아메노모리 호슈」. 中村榮孝外. 『朝鮮通信使』, 東湖書館. 1982. pp.43-67.

- 小林宏・高塩博編・高瀬喜朴 著. 1988. 『大明律例譯解』. 創文社.
- 小早川欣吾. 1927. 「明律令の我近世法に及ぼせる影響」. 『東亞人文學報』4卷2號.
京都大學 人文學研究所. pp.197-257.
- 松下忠. 1934. 『紀州の藩學』. 鳳出版.
- _____. 1953. 「大明律研究に於ける紀州藩と護園學派」. 『和歌山大學
學藝學部紀要』. 人文科學 III.
- 水上涼. 『ユダヤ人と日本人の秘密』. 日本文藝社.
- 水田紀文. 「國際人 兩森芳洲」. 『兩森芳洲關係資料調查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 1994. pp.226-228
- 阿部吉雄. 1965.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出版部.
- _____. 1998. 『退溪와 日本儒學』. 김석근(역). 『전통과 현대사』.
- 野澤政直. 1990. 『禁書 聖德太子五憲法』. 東京: 新人物往來社.
- _____. 1993. 『荻生徂徠』. 中公新書.
- 楊鴻烈. 1937. 『中國法律在東亞諸國之影響』. 上海: 商務印書館.
- 奥野彦六. 1979. 『徳川幕府と中國法』. 創文社. 131면.
- 月海千峰. 1993. 『古代ユダヤ人と 聖德太子の秘密』. 文藝社.
- 渭川健三. 1988. 『日本と朝鮮における朱子學』. 同朋舎出版.
- 田川孝三. 1968. 「清州 刊經國大典註解について」. 『朝鮮學報』48.
- _____. 1980. 「大典詞訟類とその類書」. 『東方學志』23・24호. 연세대 국학
연구원.
- 井上光貞. 1983. 『古代日本思想史の研究』. 岩波文庫.
- _____. 『日本の歴史』3. 小學館.
- 中田 薫. 1064. 「支那に おける 律令法系の 發達について」. 『法制史論集』4,
岩波書店. 69頁.
- _____. 1926. 『法制史論集』卷1.
- _____. 1956.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 創文社.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 研究』.
- _____. 1965. 「朝鮮初期の 受圖書倭人」. 『日鮮關係史の 研究』上.
吉川弘文館. 昭和 40. 517-572頁.
- 中村榮孝외. 1982. 『朝鮮通信使』. 동호서관.
- 泉澄一編. 1982. 『兩森芳洲全集』. 關西大學出版部. 1-4卷.
- Charles Holcombe. 1997. “*Ritsuryo* Confucian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57(2). pp. 543-573.
- Charles Wing-Hoi Chan. 1998. “On Ogyu Sorai’s Critique of Chu Shi’s Program of Learning to be a Sage.” *Monumenta Serica: Journal of Oriental Studies*. 46. pp. 195-232.
- Dan Henderson. 1957. “Japanese Legal History of the Tokugawa Period; Schola and Sources.” Univ. of Michigan Occasional Papers. No. 7. pp. 100-121.

- _____. 1970. "Chinese Legal Studies in Early 18th Century Japan," *Journal of Asian Studies*. 30(1). pp. 21-56.
- Henry Maine. 1861. 1986. *Ancient Law*.
- Ishii Shiro. 1976. "Recht und Verfassung in Japan während der Tokugawa-Zeit." *Beiträge zur Wirtschafts-und Sozialgeschichte: FS f. Herbert Helbig zum 65. Geburtstag*. hrsg. von Knut Schultz, Köln.
- Iwatani Juro. 1995. "The Supreme Court as Repository of Legal Symbols." *Kei Law Review*. 8. pp. 75-100.
- John B. Henderson. 1984.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Chinese Cosmology*. Columbia Univ. Press.
- John Hall. 1979. *Japanese Feudal Law*. Yokohama.
- Kate W. Nakai. 1988. *Shogunal Politics: Arai Hakuseki and the Premises of Tokugawa Rule*. Harvard Univ. Press.
- Kenneth R. Robinson. 2000(a).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Aspects of Korea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1). pp. 109-125.
- _____. 2000(b). "the *Haedong Chegukki*(1471) and Korean-Ryukyuan Relation, 1389-1471." *Acta Koreana*. 7. Vol.3. pp.87-98.
- M. Frederick Nelson. 1946.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 Asia*. pp. 86-106.
- Mark Setton. 1997. *Chong Yakyong: Korea's Challenge to Orthodox Neo-Confucianism*. SUNY.
- Maruyama Masao. 1974. *Studies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okugawa Japan*. Univ. of Tokyo Press.
- Min Tuki. 1996. "The Identity and Prospects of East Asia: A Historical Approach." paper read at the 1996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sian and the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ct. 16-17. p. 6.
- Otto Kissel. 1991. *Die Justitia*.
- R. Miller. 1998. "Chinese 法(fa) in Altaic: A further Not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tudies*. 118(2). pp. 268-273.
- Ronald Toby. 1991.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Stanford Univ Press.
- Roy A. Miller and N. Naumann. 1991. "Altjapanisch Fafuri: Zur Priestertum und Schamanismus im vorbuddhistischen Japan." *Mitteilung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116. Hamburg.
- W. Schild. 1993. *Recht und Gerechtigkeit im Spiegel der europäischen Kunst*.

Legal Exchanges between Chosun Korea and Tokugawa Japan

Chong-Ko Choi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legal exchanges between the late Chosŏn dynasty since 1592 and the Tokugawa Bakuhu(1600-1868).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Common Law,” the present writer, myself, tries to find out the commonness and see the interactions of two traditional countries.

The experiences and the observations of Korean envoys, deployed to Edo Japan from 1607 to 1811, were written and published in the series of *Haeheng Chongje* in 12 volumes. These documents reveal that the Korean envoys did not intend to learn the Japanese law. On the contrary, they underestimated and despised the Japanese customs and institutions.

And, during the Toyotomi Hideyoshi's Invasion to Chosŏn(1592-97), many Koreans were kidnapped to Japan. Among these captivates, scholars like Kang Hang(1567-1618), Jinyong Lee(1571-1682) and his son Maegye Le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eaching the Ming and Chosŏn's laws to the Japanese intellectuals.

Zunanori Maeda(1643-1724) and Hakuseki Arai(1657-1725) were especially eager to study the Chinese and Korean laws. Tokai Ito(1670-1736), the son of the famous Neo-Confucianist Jinsai Ito(1627-1705) wrote a book *Chosŏn Kwanjikgo(Korean Official Institutions, 1711)* on the basis of Korean national Code *Kyungkuk Taejeon(Code for National Governance, 1518)*. Hoshu Amenomori(1668-1755) wrote two books concerning Korea; *Chosŏn pungsokgo(On Korean Customs, 1722)* and *Kyorin Chesong(Diplomatic Manual, 1723)*.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incerity(*Songsin*) for the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Korean scholar of Practical School(*Silhak*) Yagyong Chung(1762-1836) read the books of Jinsai Ito and Sorai Ogyu. He said that Korean did not need to worry about Japan any more, because the Japanese also seemed to be rightly enlightened by the Confucian learning.

The Korean National Code *Kyungkuk Taejeon*(1518) was introduced to

Japan and studied and partly published by the Japanese scholar Tokai Ito.

The Commentaries of *Ming Code* published in Korea with the name of *Tae-Myongyul Chikhae*(*Direct Commentary of Great Ming Code*) and *Tae-Myongyul Kanghae*(*Commentaries of Great Ming-Code*) were also imported to Japan. Sorai Ogyu wrote the *Minrits Kokujikai*(*Ming Code in Mother Tongue*). To compare these commentarie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ased on East Asian common law. Some Korean books concerning the judicial procedure were imported and preserved till now at the Hosa Archives in Nagoya and Naigaku Archives in Tokyo. They are *Sasong Ryuchi*(*Procedural Manuals*) and *Taejeon Sasong Ryuchi*(*Procedural Manuals from the Code*).

This study is basically a general survey of Korean-Japanese inter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we develop it further and deeper, we could apply it into each legal field like cons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s, civil and commercial laws and criminal law. This paper could be the general basis of these future researches by the specialists of each positive legal field.

최종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151-742.

Tel: (02)880-7578(O), (02)582-1506(H). E-mail:choick@snu.ac.kr